

소방기기 품질검정은 민간 방재단체에서



李承煒
〈방재연구부 부장〉

2. 영국

법학상 분류로 유럽 제국의 대륙법계(大陸法系)와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英美法系)가 대분(大分)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판례법이 중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방화(防火) 제도·조직·소방에 관련된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통례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 아일랜드 등 4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외에도 수도 런던 지역이 있어 실제로 다섯 지방이 있는 셈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는 큰 차가 없으나 이들 지방과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제도·언어상 어느 정도의 차이를 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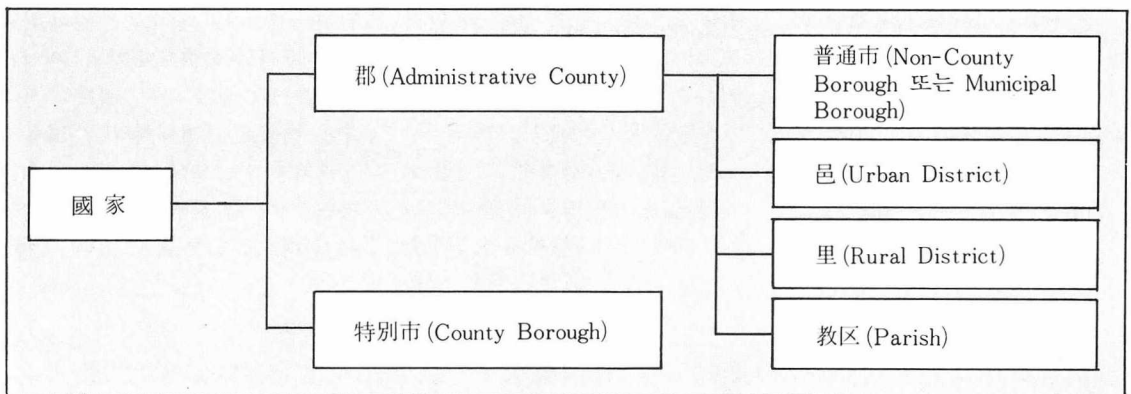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전형적인 행정 단위를 보면 별표와 같다.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와 유사하나 교구가 없다. 영국에서는 군(郡)이라는 용어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인 지명으로서 이와 같은 군이 잉글랜드에 40개, 웨일즈에 12개, 스코틀랜드에 33개, 북 아일랜드에 6개가 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는 행정 단위의 Administrative County로서 전통적인 군의 수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영국에서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소방에 관한 규제를 주로 건축법에서 하고 있으며 건축법도 위에서 말한 다섯 지방에 따라 상이하다. 가령 런던은 London Building Act와 같은 이름의 건축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축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 및 법령(Regulation/By-law)이 있는데 예를 들어 The Building Regulation-1972 (England, Wales), London



Building(Constructional) By-law 등이 그것이다.

특별히 공장에 대하여는 모든 지역에서 공장법(Factory Act)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각 군 또는 특별시의 방화 위원회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허가, 화재안전조치, 화재예방, 소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극장·홀·음식점·상점·창고·학교 등에 대하여는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Act)을, 사무실·점포 등에 대하여는 사무실·점포 및 철도 시설법(Offices, Shops and Railway Premises Act)을, 숙박 시설·양호시설·오락시설·클럽·사교장·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화재 예방법(Fire Precautions Act)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방재 연구는 원래 보험업자들의 영역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소방대를 최초로 조직한 것도 보험업자들이며(1667년) 화재 시험소를 최초로 건립한 것도 보험업자들이었다(1889년).

현재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통계는 화재보험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 임무를 설명할 때에 상론코자 한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은 소방서가, 재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험회사는 재산구호대(Salvage Corps)를 조직, 화재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여 재산피해 방지-불로 인한 피해도 피해러니와 화재시 주수(注水)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소방서의 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이 재산 구호대를 해체하였다고 전해진다.

3. 서독

독일에서는 17세기 이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에서 주택의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 왔다. 또한 화재보험회사들의 기술진이 실시하는 점검이 일부 지방에서는 그대로 화재예방점검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서독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소방법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타 선진 제국의 경우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에 관한 규제는 10개 지방에서 사용하는 서로 상이한 건축법에 거의 들어있고, 이밖에 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방 행정을 주로 다룬 소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법 9종, 소방법 8

종이 있고(예: Nordrhein-Westfalen 건축법) 중앙 정부는 방화(防火)에 대하여 거의 무관한 대신 방화 규제는 지방정부 소관이다.

화재연구에 관련된 연구소로는 현재 지방정부의 기원을 받는 5개 연구소가 있으나 주로 응용연구분야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비해 보험회사는 VdS, AZ-T 등 기초+응용연구를 담당하는 큰 규모의 시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 방재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수긍을 할 만하다.

소방기기는 소화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국가 검정은 없고) 보험업자들이 검정을 실시하며, 소방설비업자의 자격시험과 인정도 역시 보험업자가 실시하는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4. 캐나다

캐나다의 제도는 미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온타리오, 뉴파운들랜드 등 지방별로 상이한 건축법이 있고 이 건축법들이 소방에 관한 규제를 주로 담당한다. 각 시별로는 건축법을 보완기 위해 조례가 있는데 20여년 전만 해도 건축법은 각 시별로 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타리오 안에서만 28종의 건축법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온타리오에 1종만이 있다.

특히 1970년 Act of Parliament에 의하여 반관반민 단체인 Standard Council of Canada를 설립, 각종 기술기준 통일을 가능한 한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소방기기,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은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가, 경보기 외의 전기제품, 전자제품은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역시 민간 검정이다.

5. 스위스

서독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19세기 이래 26개 주(Canton) 중 22개 주에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 22개주중 19개 주가 주당국(Cantonal Institute)의 직접보험취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료 수입의 35% 정도를 소화용 배수관의 유지·관리 등 방재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1978년~1980년 GNP대비 화재피해액이 0.1%미

만인 나라는 선진국 중 스위스(0.08%) 밖에 없었다.

신축후 입주 전에 사소한 법규위반사항이라도 있으면 입주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6. 일 본

선진국중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일본이다.

즉 전국적으로 동일 사용하는 소방법이 소방에 관한 규제를 주로 담당하며 소방기기 검정도 형식은 민간단체가 하지만 실제로는 관의 간섭을 받는 기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첨언할 사항은, 소방설비의 검정이 한동안은 관과 민(보험업계)의 이원화 제도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주요원인은 관에 의한 검·인정제도가 신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업자들은 관에 의한 검·인정제도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 나름의 검·인정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리 관에 의한 테스트에 합격하였다고 해도 보험업자(요율산정회가 담당) 규정에 맞지 않으면 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관에 의한 테스트 신뢰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험 검·인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선진국중 민간(특히 보험업자) 검·인정이 없는 나라는 일본 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년안으로 관이 검·인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리라는 예상이 있다. (실제로 소방기기의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간부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예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민간 주체는 타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업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시험과 연구분야는 현재도 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관주도형을 계속 유지하리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일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휴유증, 가령 지진으로 인한 화재·폭발과 같은 것은 일반화재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의 연구로써는 대비하기가 곤란한 성질의 것이

다. 그러므로 민간단체가 이런 연구를 감당하기에는 연구 테마의 규모나 소요비용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자연히 정부가 이를 직접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화재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방연구소”와 “건축연구소”인데 전자는 자치성 소방청 산하이고 후자는 건설성 산하로서 두 기관의 성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소방연구소는 그 연구소의 명칭이 주는 이미 지 때문에 연구 테마가 단순한 것들 같으나 실제로 이 연구소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석유 콤포나트 재해연구”, “원자력화재 연구”, “지진화재 연구” 등 굵직한 테마들이다.

건축연구소에서도 지진에 강한 건축재료와 설계의 연구 등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자격 민간 점검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역시 “민”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의 관장하에 있는 “일본소방설비 안전센터”가 있다. 또한 소방기기의 검정은 “일본 소방검정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재단법인 일본방화협회, 소방과학종합센터, 일본방염협회, 동경이과대학 화재 과학연구소 등 대소 방화기관이 있는데, 일본의 “近代消防”이라는 잡지가 최근(1985년 1월호)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일본에는 방재에 관련된 단체(방화 포함)가 모두 61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개관하였거니와 그 공통점을 찾아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 규제를 주로 건축법에서 하고 있으며 소방기기의 품질 검정을 민간단체가 하는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전 주택물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제도에 대한 개념을 얻었으므로 차후부터는 유명 방화단체의 유형별, 기관별 업무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